

대 통 령 령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20년 5월 12일

국무총리 정 세 균

국무위원

교육부장관

유 은 혜

●대통령령 제30666호
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소속 학교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”를 “공단에 제출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확인하여야”를 “확인해야”로, “아니하는”을 “않는”으로, “하여야”를 “해야”로 한다.

제4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학교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”를 “공단에 제출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아니하는”을 “않는”으로, “하여야”를 “해야”로 한다.

제53조제1항 중 “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”를 “공단에 제출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5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교직원등이 소속하였던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”를 “공단에 제출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63조의2제1항 중 “퇴직 당시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”를 “공단에 제출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각종 급여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신청할 때 미리 해당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 등의 확인을 받도록 했으나,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여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에 따른 요양급여, 장해급여 및 순직유족급여의 경우에만 학교경영기관의 장 등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해당 요양급여, 장해급여 및 순직유족급여 외의 급여 청구 절차에서 학교경영기관의 장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

2020년 5월 12일

국 무 총 리 정 세 군

국 무 위 원
과학기술정보 최 기 영
통신부장관

●대통령령 제30667호

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4항제8호 중 “정보통신산업진흥원”을 “정보통신산업진흥원(이하 “정보통신산업진흥원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4. 정보통신산업진흥원

제32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3. 정보통신산업진흥원

제42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, 「상공회의소법」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(이하 “대한상공회의소”라 한다)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전문기관·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42조의7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그 수행기관 및 수행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.

제43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”를 “정보통신산업진흥원,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전문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정보통신융합 등의 기술·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가 규제특례 신청 및 조건 이행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접수 업무 및 지원 업무 등을 위탁·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「상공회의소법」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관련 전문기관·단체를 추가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